

보도시점 2023. 9. 26.(화) 11:00
9. 27.(수) 조간

배포 2023. 9. 26.(화) 09:00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23.10~‘24.2) 운영

-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 지역 및 산란계·오리 집중 관리, 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
-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기간 단축(6주→ 2주) 및 항체검사 강화
- 아프리카돼지열병, 접경지역 등 13개 시·군 집중관리,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겨울철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농식품부는 철새 방역관리, 농장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기본으로 위험수준에 비례한 차등화된 방역관리, 계열사 및 농장 책임 방역, 민간협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 올해 1~8월 해외 야생조류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14.7% 증가(2,933건 → 3,364), 9월 말~10월 국내로 이동하는 극동지역(사할린, 연해주)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하여 철새 도래 초기인 10월에 주요 철새도래지 19개소의 조류 분변 등 검사를 확대(648건 → 746)한다.

* (우리나라) 가금: ‘21.11.8. → ‘22.10.17.(-22일), 야생조류: ‘21.10.26. → ‘22.10.10.(-16일)
(일본) 가금: ‘21.11.10. → ‘22.10.28.(-13일), 야생조류: ‘21.11.11. → ‘22.9.25.(-47일)

과거 다발지역인 24개 시·군을 선제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고위험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1,920호) 중에서도 발생 위험성이 큰 농가 692호를 별도 선별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시 계란 수급에 영향이 큰 산란계는 10만수 이상 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그간 발생빈도가 높았던 축종인 오리에 대해서는 고위험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일명 휴지기제)을 실시한다.

* (10만수 이상) 농장 내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20만수 이상) 통제초소 설치, (30만수 이상) 자율차단방역프로그램 시범 도입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사육농가의 교육·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오리 농장 검사*, 발생 계열화사업자 도축장 검사** 등을 강화하며, 민간기관을 활용한 정밀검사도 확대(864건 → 4,600)한다.

* 발생 시·군 + 예찰지역은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4회(방역대 해제 시까지), 그 외 지역 3회

** (현행) 2주간 도축장 출하 오리농장 중 60% 농장 검사 → (강화) 첫 발생 시 60% → 2차 80% → 3차 100%

지난 겨울과 마찬가지로 2주마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단위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여, 살처분 마릿수를 최소화한다.

* ('21/22) 47건 발생, 730만수 살처분(건당 15만수) → ('22/23) 75건, 660만수(건당 8.8만수)

구제역은 올해 5월 국내에서 4년 만에 발생한 바가 있고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올 겨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백신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접종 기간을 단축*(6주 → 2주)하고 일제접종 기간 접종이 누락되었거나 유예된 개체를 확인하여 추가 접종한다.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소 자가접종 농장당 항체검사 두수 및 도축장 무작위 검사를 확대**하고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처분한다.

* 접종기간 10.4~18(2주). 다만, 수의사 등이 접종을 지원하는 소규모 농장은 10.4~31(4주)

** (농장당 검사두수) 5두 → 16두, (도축장) 소 1.8천두 → 10천두, 염소 0.6천두(신설)

발생우려가 높은 접경지역, 과거 발생지역 등에 대해 백신접종 실태 등을 집중관리하고, 주1회 전화예찰 실시, 소독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말부터 연중 발생하는 경향이며, 최근 강원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발생(9.25)하여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광역울타리 이남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화천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등 발생우려지역 13개 시·군에 대해 예찰·소독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를 집중 수색한다.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 남한강 이남, 경북북부 등 14개 시·군에 대해서도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집중 추진하고, 광역 울타리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정부에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하여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며, 가축전염병 조기발견·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 1588-9060/1588-4060)”을 강조하였다.

- 붙임 1. 특별방역대책기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주요 변경사항
 2. '22/'23년 및 '23/'24년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비교 (요약)
 3. 특별방역대책기간 구제역 방역 주요 변경사항
 별첨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세부내용

담당 부서 <총괄>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동식 (044-201-2511)
		담당자	서기관	오재협 (044-201-2515)
<AI>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책임자	과 장	김용상 (044-201-2551)
		담당자	사무관	김석재 (044-201-2555)
<구제역> <ASF>	구제역방역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1-2531)
		담당자	사무관	김지호 (044-201-2532)
		담당자	사무관	이주원 (044-201-2537)



붙임1

특별방역대책기간 시 방역 주요 변경사항

구분		평시	특별방역기간(강화)
상황실		· 미운영	·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발생 시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로 전환
예찰·검사	야생조류	· 5~9월 야생조류 300여건 예찰·검사	· 9~10월 중 집중적인 분변검사 실시 * ('22.9-10월) 3,842건 → ('23.9-10월) 4,270(11.5%↑) · 10월 중 야생조류중 초기서식 및 항원 초기 검출 철새도래지(19개소) 정밀예찰 및 검사 확대 * ('22/23) 678건 → ('23/24) 746(10.0%↑) · 10~3월까지 야생조류 예찰·검사 강화 * (분변) 18,096건, (포획) 2,280건, (폐사체) 수시
	가금농장	· 상시예찰 계획에 따른 검사	· 강화된 예찰체계 운영으로 검사주기 단축 * (산란계·종오리·메추리·종계) 분기 1회 → 월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1회 → 2회 ※ 발생 시에는 검사주기 추가 단축 · 도축장 검사 강화(닭 10%, 오리 30%)
철새도래지 관리		-	· 철새도래지(283개소) 축산차량 및 종사자 출입 통제 ·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등 소독 강화
수평전파 차단조치		-	· 행정명령(10건) 및 방역기준(8건) 추가 공고 시행(10.1.~)
입식·출하 관리		· 가금 입식 사전 신고제 운영 * 입식 7일 전까지 입식 신고	· 가금 입식 전 신고제 운영 강화 * 미흡농가는 현장점검 및 보완 후 입식 허용, 오리농가는 환경검사 추가 · 위험시기별 가금 출하기간 단축 운영 * (육계) 특방기간·발생 시 5일 내 출하 (오리) 특방기간 3일 내, 발생 시 당일 원칙
전담관 운영		-	· 가금농장별 전담 공무원 지정 운영
전통시장 방역관리		·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 (월 1회)	·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월 2회) * 발생 시 매주 운영 · 살아있는 초생추, 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 금지(행정명령)
소규모 농가 방역관리		-	·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행정명령, 발생 시) · 소규모 농가 수매·도태 권고(발생 시)
소독시설 운영·관리		·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설치 확대·운영 * 거점 : (평시) 188개소 → 227('22년 기준) * 통제초소 : (평소) 24개소 → 308('22년 기준)
오리 사육제한		-	· 위험시기(11월~2월) 오리농가 사육제한 명령 실시
계열사·협회 방역관리		· 분기별 계약사육농가 방역 교육·점검	· 계열사 대응력 제고를 위한 CPX 既 실시 · 계열사 방역점검팀 운영
살처분		-	· 주기적인(2주) 위험도 평가를 통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 10.1~10.14일까지 살처분 범위는 500m 내 전축종, 소규모 농가 발생 시 해당 농장만 살처분

붙임2

'22/'23년 및 '23/'24년 시 특별방역대책 비교 (요약)

구분		'22/'23년 특별방역대책기간	'23/'24년 특별방역대책기간
야생조류 예찰·검사		· 고위험 철새도래지 미선정	· 철새 도래 초기, 고위험 철새도래지 19개소를 선별하여 정밀 예찰 및 검사 확대 (648건 → 746, 10.0% ↑)
		· 포획검사('22.9.-'23.4월) 1,920건	· 검사 확대(1,920건 → 2,140, 11.5% ↑)
		· 분변검사('22.9-10월) 3,842건	· 9~10월 중 집중적인 분변검사 실시 (3,842건 → 4,270, 11.5% ↑)
오리 사육제한		· 그간 '사업' 형태로 진행	· 고위험지역 ' 오리 사육제한 ' 명령
중점방역 관리지구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모든 농가 (1,504호) 관리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고위험농가를 선별(1,920호 중 692호) 하여 집중 관리
다발지역 관리		· AI 발생 후 고위험지역 지정	· 다발지역(24개 시·군) 을 선제적으로 ' AI 고위험 관리지역 '으로 지정 → 강화된 방역조치 적용
계열사 책임방역		· 계열사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분기별 점검 및 결과 통보(지자체)	· 계열사가 자체 방역관리계획 을 수립하여 시·도 승인 을 받은 후 계획서에 따른 계약사육농가 방역관리 * 의무화되기 전 지침으로 시범 운영
		· 계열사 자율방역프로그램 공통 기준서 개발·배포	
		· 종오리 위험시기별 정밀검사 강화(특방)	
산란계 특별관리		· 산란계 밀집사육단지(10개소) 위주 방역관리	· 현행 + 10만수 이상 산란계 특별관리 - (10만수 이상) 터널식 소독기 설치 - (20만수 이상) 통제초소 설치 - (30만수 이상)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 시범 도입 으로 농장별 맞춤형 관리
오리 검사	육용 오리	· 나주·영암·무안·함평·부안·고창·정읍 및 예찰지역(3~10km) 4회 검사	· 발생 시·군 + 예찰지역 4회 검사 (방역대 해제 시까지)
	도축장	· 발생 계열사 도축장에 출하한 오리농가의 60% 검사	· 발생 단계별 검사 강화 (1차 60% → 2차 80% → 3차 100%)
민간기관 활용검사		· 시범사업 실시(864건)	· 민간기관 활용 정밀검사 확대 (4,600건 432%↑)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 지역 단위 살처분 범위 조정체계 운영	· 지역 단위 살처분 범위 조정체계 본격 운영 (동일 시·군 3건 이상/집중 발생 시, 위험도 평가 즉시 실시)

붙임3

특별방역대책기간 구제역 방역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평 시	강 화 (특별방역기간)
1	상황실	·미운영(비상연락체계 유지)	·운영
2	영상회의	·미운영	·운영
3	일제접종	·전국 소·염소 대상 일제접종 실시(연 2회, 4·10월) -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접종 누락 및 유예 개체 대상 추가접종 등 관리 강화
4	백신 관리	·약 2개월분 이상 국내 물량 확보	·국내 물량 확대(약 3~4개월분)
5	접종 사각지대 관리	·접종 미흡 농가 과태료 부과 및 보강접종, 항체양성률 개선 여부 확인	·ICT 방역 정보를 활용, 백신접종 사각지대 집중 관리 - (확인 검사) 백신 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5두→16두) - (백신 구매) 사육두수 대비 연간 백신 구매량이 저조한 농장 항체 검사 및 점검 - (항체양성률) 과태료 부과기준 미만 농가에 대한 보강접종 및 개선여부 확인(수시) - (접종 정보) 백신접종 정보 미등록 개체 비율이 높은(20%이상) 소 농가 점검 ·항체양성률 미흡 시군 합동 점검 (농식품부·검역본부)
6	위험지역 취약농가 관리	·예찰 활동 및 방역 점검, 소독(전국)	·위험지역, 취약농가 등 관리 강화 - (예찰) 항체검사가 누락 된 젖소 및 한육우(전업농), 돼지 농가 검사 ·위험지역, 취약농가 점검·소독 강화 - (점검) 과거발생 및 발생우려지역, 종돈장 대상 방역 점검 실시 - (소독) 접경지역 및 과거발생지역, 전국 가축시장 등 소독 강화
7	환경검사	-	·바이러스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축산관계시설 및 차량 환경검사 실시 (월별·분기별 1회 이상)
8	분뇨 관리	-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23.10 ~ '24.2, 5개월간)
9	ICT 활용	·행정구역(시도, 시군구) 단위로 방역관리	·GPS 기반 권역별 방역관리* * 발생 시 권역단위 Standstill, 긴급접종 등